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9월 2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송**	송** 1953-12-01	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1길	무단전출
유**	유** 1962-05-24	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1길	무단전출
권**	권** 1973-02-04	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1길	무단전출
홍**	홍** 1981-07-27	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2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68-08-14	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1길	사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배 정숙 문의전화 : 061-540-6672)

2016년 09월 13일

의신면장 